

전략물자 무역환경에 따른 글로벌기업의 글로벌 컴플라이언스에 관한 연구

최 춘 호*

-
- I. 서 론
 - II. 국제 전략물자수출입통제제도에 관한 고찰
 - III. 우리나라 전략물자수출입통제제도에 관한 고찰
 - IV. Global기업과 정부의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및 기대효과
 - V. 결 론
-

I. 서 론

범세계적인 자유무역의 확산과 교통□정보기술의 발달로 국가 간 무역장벽이 낮아지면서 Global기업은 생산 및 조달 등 경영비용 절감 및 신규시장 확보를 통한 지속적 성장 기회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Global기업은 경영의 투명성 요구, 각 국의 수출입규제 등 예측불허의 경영환경

*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주) 물류담당 임원

계약요인에 노출되면서 Global Compliance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Global Compliance란 Global기업이 경영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국제법규와 환경변화를 인지하고, 이에 대응하고자 자체적인 절차, 규정 및 정책 등을 구축해 가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활동은 통상적으로 기업의 회계, 구매, 공급망 관리, 통관부문, 수출입관리, 품질관리, 환경, 감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진다.

Global Compliance의 한 분야인 전략물자수출입통제제도는 9·11 테러 이후 유엔안전보장이사회결의 1540호 (이하 "UN1540")를 거치면서 국제적인 이슈로 급부상하였다. 세계 주요 각 국의 정부 및 기업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에 들어 제도적으로 일정 수준에 접근하였으나, 전반적인 정부 제도정비 미흡, 기업의 관리능력 부재로 인하여 주요 선진국 대비 부족한 점이 많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전략물자 수출입통제제도 및 그에 대한 Global 기업의 대응방안"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고, Global Compliance를 통해 경영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불확실성에 대한 유연성을 증대시킴으로써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업측면의 대응방안제시 및 정부의 정책지원 방안 제시"를 그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II. 국제 전략물자 수출입통제제도에 관한 고찰

1. 전략물자 및 국제수출입통제제도의 의의

전략물자수출입통제란 국제평화 및 안전에 위협을 주는 인명살상용 무기인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생화학무기·미사일 등 대량파괴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의 제조·사용 및 저장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전략 기술·물자가 우려국가나 테러조직으로 확산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전략 물자¹⁾ 라는 용어는 COCOM체제 통제물품을 흔히 '전략물자'(strategic items)라고 부르면서 유래하였으며 무기류와 무기류의 제조·개발에 이용 가능한,

군사용 및 산업용으로 모두 사용이 가능한, 이중 용도 물품 및 기술을 모두 일컫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전략물자수출통제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및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협정에서도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데,²⁾ 이는 자유무역에 앞서 국가의 존립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국제수출통제는 국제평화와 안보유지의 국가안보적 측면, 기업의 국제거래가 국가 간 분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외교적 측면, 통제품목의 교역에 관한 투명성 확보로 선진국으로부터의 첨단기술□물자의 수입을 촉진한다는 산업적 측면과 아울러 국내 전략물자□기술의 해외시장 진출지원을 통한 기업지원 측면으로서 의의가 있다.³⁾

2. 국제수출입통제제도의 배경 및 연혁

오늘날 '비확산수출통제'(nonproliferation export control)로 알려진 전략물자수출통제는 1940년대 초 미국에서 운용되기 시작하였고⁴⁾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는 경제적 통제로서 군수품인 철, 석탄, 석유 등과 무기 생산에 가용될 수 있는 공업제품 등의 공급통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⁵⁾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중심의 서방자유주의 국가들이 구소련 중심의 공산국가로 전략물자 및 기술 등이 이전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 1950년 1월 '다자간 대공산권

1) 최승환, 국제경제법 제3판, 법영사, 2006, p. 591

2) 국가안보상의 예외조치로써 허용되는 조치로는 i) 특정정보의 공개가 자국의 중대한 안보이익(essential security interests)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정보의 비공개조치, ii) 1 핵분열물질이나 이로부터 추출된 물질에 관한 조치, 2 무기, 탄약, 전쟁장비의 거래 및 군사시설에 대한 보급 목적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행해지는 물품 및 재료의 거래에 관한 조치, 3 전시 또는 기타 국제관계상 긴급 상황에서 취하는 조치와 관련하여 자국의 중대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또는 iii)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유엔헌장상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회원국으로서 취하는 조치 등이 포함된다. 1994년 GATT 제21조 (a), (b), (c) ; 서비스무역일반협정 제14조의 2 제1항 (a), (b), (c) ; 무역관련지적 재산권협정 제73조 (a), (b), (c).

3) 산업자원부/전략물자관리원, 전략물자 수출통제 전문과정, 산업자원부, 2007.

4) 한국무역협회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 수출통제: 이론과 실무, 박영사, 2006, p.31.

5) 김종찬,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p. 1.

수출통제조정위원회(Coordinating Committee for Multilateral Export Controls: COCOM)'가 설립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통제대상 물자, 기술 등이 위원국 간의 경제적 이익과 국제안보환경에 따라 변화되면서 서서히 악화되다가 1990년 독일의 통일과 1991년 구소련의 붕괴와 함께 그 목표를 잃으면서 1994년 3월 결국 동 체제는 붕괴되었다. 이러한 대립과 견제 속에서 전략물자 통제는 1990년대 이후 무차별적 대량 인명살상 목적의 생화학무기□핵무기 및 미사일 등이 급격히 확산되면서 기존의 재래식 무기 통제에서 탈피하여 WMD 비확산 통제 및 새롭게 국제안보의 위협요소로 대두된 테러집단 및 불량국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비확산형 수출통제 체제로 변화하였다.

현재 국제수출통제체제는 핵확산 방지목적으로 1978년 발족된 핵공급그룹(Nuclear Suppliers Group : NSG), 화학무기 사용 통제 목적으로 1985년에 발족된 호주그룹(Australian Group : AG), 1987년 발족된 미사일통제체제(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 MTCR)와 재래식 무기통제목적으로 1996년 발족된 바세나르협약(Wassenaar Arrangement : WA)의 4개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각 체제의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 표1 > 수출통제 현황

구 분	국제수출통제체제			
	(WA)	(NSG)	(MTCR)	(AG)
설 립	1996	1978	1987	1985
회 원 국	40개국	45개국	34개국	40개국
한국가입	1996	1995	2001	1996
통제대상	재래식무기/ 이중용도품목 재래식 무기	원자력전용물자 및 이중용도품목 핵무기	미사일관련물품 미사일 및 운반체	생화학무기 원료 및 제조장치 생화학무기

* 자료 : 한국무역협회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 , 수출통제(이론과 실무), 2006, 박영사

자유무역질서를 지향하는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현 Doha Development Agenda : DDA/WTO)체제는 국가 간 원산지 간 비차별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국가안보상의 예외를 허용하여 전략물자□기

술에 대한 수출 통제를 무역규범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9 □ 11 테러의 직접적인 피해국인 미국의 주도하에 전략물자 수출입통제는 국제안보 패러다임의 중심이자 新무역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다.⁶⁾

국제적으로는 2004년 4월 UN 안보리결의(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 UNSCR) 제1540호⁷⁾ 채택으로 모든 회원국이 수출통제의 규범화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제1540호는 <표2>와 같이 평화를 위해 대량파괴무기의 개발 □ 제조에 이용될 수 있는 물자 □ 기술이 테러조직에 수출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전략물자의 수출, 중개, 환적 등 공급사슬(Supply Chain)의 효과적인 통제까지 요구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최근 국제동향을 반영하여 관련 법을 강화□개편하는 한 편, 상황허가(Catch-All) 및 중개허가제도를 도입하였고⁸⁾, 무형기술이전(Intangible Transfer of Technology: ITT) 법제화를 추진한 바 있다.⁹⁾

< 표2 > 수출통제와 UNSCR(유엔안보리결의)

	제1540호	제1718호	제1737호
목 적	WMD 이전통제 강화	對북한 제재	對이란 제재
채택일	2004.4.28	2006.10.14	2006.12.23
배 경	2001년 9 □ 11	2006년 10월 북 핵실험	이란 IAEA협정 불이행
주 요 내 용	□WMD 이전관련 모든 행위 통제 □국내수출통제조치 법제화 요구	□재래식무기□WMD 및 사치품의 대북이전 통제 □對북 PSI(비확산안보구상)	□핵무기□미사일 품목 통제 □기술□금융지원 금지 *

자료: 산업자원부/전략물자관리원, 전략물자 수출통제 전문과정, 산업자원부, 2007.

6) 산업자원부/전략물자관리원, 전략물자 수출통제 전문과정, 산업자원부, 2007.

7) UN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540호(04.4.28). 9.11테러 이후 국제사회의 수출통제 강화 노력의 산물로서 모든 유엔회원국으로 하여금 WMD 관련 물자의 개발, 생산, 사용, 수송 등에 관련된 국내 및 국제적 유통단계 통제를 요구하고 있다. 동 결의는 테러단체와 같은 비국가 행위자를 제재대상으로 설정하고 WMD 확산방지를 위해 모든 국가에 일반적 준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UN헌장 제25조에 따라 유엔안보리의 결정은 모든 회원국들에게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8) 2006.12 대외무역법 개정

9) 2007.8 기술개발촉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3. 국제수출통제제도와 기업지원제도

(1) 강력한 국제수출통제제도

전략물자의 통제는 국제적으로 강력하게 추진되어 왔는데, 1990년대 초 미국 및 유럽 국가들이 도입한 Catch-all 제도¹⁰⁾는 911이후 더욱 강화되어 수출자가 수입자의 WMD 개발의도를 인지하였거나, 의심스러운 경우 통제품목이 아니더라도 수출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2002년부터 미국 국토안보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컨테이너안보구상(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CSI)는 미국 발 컨테이너에 대한 WMD 포함 위험성 여부를 출항 전 검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부산항 및 세계 20여개 주요 항구에서 실시되고 있다.

2003년 5월 31일에 부시대통령의 제안으로 출범한 비확산안보구상(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PSI)은 육상, 해상, 공중의 합동작전을 통해 WMD 관련 의심화물을 강제로 수색, 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일본, 호주, 유럽 등 17개국에 참여하고 있으며 기타 60여 개국의 지지를 받고 있다.

강력한 국제통제의 틀은 2004년 4월 28일 UNSCR 1540¹¹⁾ 결의로 마련되었는데, 동 결의는 UN 회원국으로 하여금 WMD 및 운반수단의 개발, 생산, 운반, 이전, 사용금지과 이를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함과 아울러 자국법에 전략물자 관리 사항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서 실질적이고 강력한 국제통제 수단으로 한층 강화되었다. 각 국의 위반자 처벌, 관리 사항의 보고의무는 유엔헌장 제7장¹²⁾에 의한 이행명령에 의거한다.

2005년 10월에 런던회의에서 개정안이 채택된 '항해안전에 대한 불법행위 방지협약'(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Maritime Navigation: SUA)은 선박의 안전을 위협하는 선박 납치 등 범죄 행위를 규제하는 협약이다. SUA는 '선박 등 해상운송수단을 이용한 새로운 양상의 해상 테러행위'와 'NPT, BWC, CWC 등 비확산조약에 위반되

10) 최종용도 통제(end use control)

11) 결의 1540은 기존의 사후적 제재 성격을 탈피하여 비국가행위자를 제재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회원국에 일정 의무를 부과하는 예방적 규제를 설정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한국안보통상학회, 「수출통제 규범의 최근동향: 현안과 과제」, 2007 p.10.

12) 헌장 7장은 기존의 사후적 제재의 성격을 탈피한다.

는 WMD와 그 운반수단 및 관련물자, 이중용도(dual-use) 물자의 운송 행위'를 신범죄(new offenses)로 규정하였다. 또한 테러□WMD 운송 혐의선박에 대한 '해상 승선□검색(boarding and search)'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¹³⁾

(2) 기업지원제도

국제적인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강화와 함께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이러한 국제무역의 심각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즉, 효과적인 수출통제정책을 체계화 하면서도 이러한 지속적 통제의 보완책으로 제도권 내 기업들에 대한 지원제도를 구축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배양에 힘쓰는 등 수출통제에 대한 지원제도를 구축하고 있다.

① 對테러민관협력제도

2001년부터 미국 세관이 운영하고 있는 '테러방지를 위한 민관협력'(Customs-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C-TPAT) 제도는¹⁴⁾ 세관과 기업(수입업자, 중개업자, 운송업자 등) 간의 자발적인 협약에 의해 세관이 요구하는 일정한 자격을 충족하여 C-TPAT의 인증을 받은 수입업자 등에게 일정한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는 수입검사항목 및 대기시간의 축소뿐만 아니라 수출규정준수 대상 기업에 선정가능성 및 위험거대로 표적화될 가능성이 낮아지는 혜택을 받음으로서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기업의 자발적인 수출관리규정(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EAR) 준수라는 지원 및 관리의 이중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② 검증된 최종사용자제도(Validated End User: VEU)

미국과 중국의 교역 증가 및 중국 내 US High Tech 산업 증가에 따른 교역 장애요소를 제거하여 기업을 지원하고 전략물자 통제하고자 하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미국에 의해 2007년 7월 도입된 제도이다. 본 제도는 민간 신용고객에 대한 적법한 무역을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원칙적으로 적법

13) 한국무역협회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 수출통제(이론과 실무), 박영사, 2006, p.49-50.

14) <http://www.cbp.gov/xp/cgov/import/commercialenforcement/ctpat/>

한 국가 내의 적법한 최종사용자에 대한 적법한 품목의 수출, 재수출 및 이진을 허가 없이 가능케 하는 제도이다. 본 제도에 의한 이점으로 수출허가 등이 제외된다는 점과 이를 통해 현지기업이 미국으로부터 수입물품 제공기간 단축에 있다.¹⁵⁾

③ 공인경제운영자제도

EU는 2005년 4월 13일에 채택된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칙(Regulation No. 648/2005)에서 공인경제운영자(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제도를 도입, WMD 확산방지를 위한 수출통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동 규칙을 준수하는 사업자에게 AEO 자격을 부여하여 세관절차의 간편화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EU의 한 회원국에서 동 자격을 획득하면 다른 회원국들에서도 별도 자격심사 없이 동일 자격이 부여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EU 역내에서는 단일의 인증 제도를 도입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게 되었다.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WCO) 역시 적법한 무역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WMD 확산방지를 위한 통제강화를 위한 세관규정의 표준안을 구축하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에 의해서 한 국가의 세관당국에 의해서 AEO 자격이 부여되면 이 경제운영자에게 각국의 세관에서 통관절차 등에 있어 상응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기업들의 자발적인 세관 요구사항 준수를 촉진시키겠다는 것이다.¹⁶⁾

④ NAFTA 공동규정의 자유안전무역 제도

세관통제의 경우 일국 차원에서의 통제만으로는 효과적인 통제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각국의 통제기준 및 절차규정이 타국의 규정과 상호 호환성을 갖기 위해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자유안전무역제도(Free and Secure Trade: FAST)를 운영하여, 미국과 캐나다의 세관 및 국경 당국을 포함한 양국의 세관당국에서 인증하는 거래자에 대해서는 자국의 통관절차를 간소화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C-TPAT의 자격인증은 FAST 제도¹⁷⁾에 참여하고 있는

15) 전략물자관리원, 미국 수출관리규정(EAR) 설명회, 전략물자관리원, 2007.10.13

16) WCO, "Framework of Standards to Secure and Facilitate Global Trade," 2005.6 (http://europa.eu.int/comm/taxation_customs/resources/documents)

17) http://www.cbp.gov//xp/cgov/import/commercial_enforcement/ctpat.fastr/

NAFTA의 또다른 회원국인 멕시코 기업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4. 주요국가의 수출통제제도 비교

Global기업의 주요 생산기지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표3> 과 같이 다자간 수출통제에 있어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과 EU¹⁸⁾는 전략물자의 철저한 관리로부터 발생하는 부수적인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측면의 제도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반하여 <표4>와 같이 글로벌 기업들의 주요 활동 무대인 동남아시아 국가의 경우 부분적인 통제제도는 갖추고 있다고는 하나, 실질적인 비즈니스 환경 하에서의 제도운용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¹⁹⁾

< 표3 > 각 국의 수출통제 현황

국가 구분	미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중국	필리핀
가입 협약	WA, NSG, MTCR, AG외 주요 조약	WA, NSG, MTCR, AG 외 주요 조약	비협약국이며, 핵확산금지조약, 생물무기협약 등 가입	비협약국이나 4개 체제 통제 List 보유	핵확산금지 조약만 가입됨 포괄적 핵 실험금지조약 등 준수	통제가 불투명함
통제 기관	상무부, 국무부	경제산업성	무역산업성	경제부 국제무역국, 국방부	상무부	무역산업성
근거 법령	수출관리법, 수출관리규정, 무기수출통제법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전략물자관리법	무역법	핵 수출 통제 조례 등	공화국법 No. 2067, 대통령령 No. 980 등
수출 허가	개별허가 특정포괄허가	개별허가, 포괄허가(일반 특정, 특별반품)	개별허가 포괄허가	개별수출허가 포괄수출허가	1허가 포괄수출허가	개별허가, 포괄허가, 입의 수출허가
통제 대상	수출관리규정 내 통제품목리스트 핵전용 물질 및 장비	통지요건이나 객관요건에 근거 대상물자, 통제지역 통제	무기 및 군사품, 지정된 특정품목	군수품, 핵, 생화학, 미사일, 반도체 장비	핵재료, 기술, 군수품, 미사일 관련 품목, 화학품 관리	방사선 물질 및 장비
품목 분류	ECCN	HS Code + ECCN	HS Code + ECCN	HS Code + ECCN	HS Code	-

* 자료 : 저자 직접작성

18) EU의 경우 미국의 C-TPAT의 개념을 담은 공급망 지원 제도를 구상하고 있다.

19) 특히 필리핀의 경우 공화국법 등에 근거 전략물자 일부를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무역거래와 관련한 전략물자의 통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표4 〉 각 국의 전략물자 관련 지원제도 비교

주요지원제도	미국	EU	일본	싱가폴	대만	중국	필리핀
Validated End User	○		×	×	×	×	×
C-TPAT	○		×	×	×	×	×
AEO		○	×	×	×	×	×

* 자료 : 저자 직접작성

Ⅲ. 우리나라 전략물자 수출입통제제도에 관한 고찰

우리나라는 1984년 이후 3차에 걸친 미국과의 전략물자 및 기술보호에 관한 협의를 통해 1987년 9월 11일 「한미 전략물자 및 기술자료 보호에 관한 한미 양해각서(MOU : Memorandum of Understanding)」²⁰⁾ 체결하였고, 동 양해각서안이 1989년 3월 국회를 통과, 5월 11일에 발효됨에 따라 대공산권 수출통제목적의 COCOM 체제 동참을 통한 전략물자 수출입통제제도가 실시되었다.²¹⁾ 이는 외견상, 양국의 전략물자 및 기술의 보호강화와 공산권 국가로의 이전을 배제함과 동시에 양국 간의 교역을 촉진키고 외교 및 안보차원에서 운영의 필요성이 있기도 하였으나, CCCOM 제도권 진입을 통한 자유로운 첨단물자 및 기술의 수출입이 우리경제에 주는 긍정적 효과를 염두에 둔 정책적인 결정이었다.

1. 전략물자수출입통제제도의 추진 경과

1987년 9월 「한미 전략물자 및 기술자료 보호에 관한 한미 양해각서」 체결 이후 우리 정부는 통제목록을 작성하고, 수입증명²²⁾ 및 통관증명 제도를

20) 본 양해각서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이 공유하고 있는 안보상의 제반 목적과 책임에 따라 체결되었다.

21) 김광식, 전략물자 수입증명서 및 통관증명서 발급제도 시행, 1993, p.17-19.

22) 한국은 전략물자수입증명(Import Certificate)제도를 199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채택하였다. 이후 1989년 전략물자 수출허가제도라는 이름으로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근거를 신설, 1992년 12월 대외무역법'에 정식으로 반영하였으며, 1993년 7월 1일 전략물자와 전략기술의 수출통제제도를 상공자원부와 과학기술처가 각각 공고하고 동년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하게²³⁾ 되었고, 수출통제를 받는 총 148개 품목군을 지정하였다.²⁴⁾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통제제도의 흐름은 <표5>와 같다.

< 표5 > 우리나라 전략물자 통제제도 경과

관련사항	태동기 (80년대후반)	도입기 (90년대초)	정착기 (90년대후반)	성숙기 (현재)
국제통제	COCOM체제	좌동	바세나르체제	UN안보리(2004년) Catch All
규제정도	미국주도 엄격한 관리	좌동	협약국간 신사협정, 형식적인 관리	회원국간법적구속력, 특정국 경제제재 가능
통제목적	첨단제품의 對공산권 수출억제	좌동	국제평화와 안보	미국안보강화 목적의 변형적 통제
영향	체제미가입시 첨단산업 육성 불가	좌동	형식적 관리로 인한 실질적 통제 불가	미국 안보에 저해되는 수출입 행위 제재
한국가입배경	첨단물자 한국수입	좌동	국제안보	국제안보 미국과 외교통상목적
허가기관	상공부 무역협력과	상공부 무역협력과	산업자원부 수입과	지식경제부 전략물자관리과
관련법령	대외무역법시행령	대외무역법(92) 대외무역법시행령	좌동	좌동
관련고시	I/C, D/V	전략물자수출입공 고	전략물자수출입공 고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공고
정부관리의지	첨단물자(전략물자) 수입관리 중심, 실질적인 관리	첨단물자(전략물자) 수입관리 중심, 관리의지미약	형식적인 수출관리	국제협약내 미국의 압력강화에 따른 허가기준 강화와 위반에 따른 제재 강화
허가서류	신청서, 계약서, 수출목적국으로부터 전략물자 수입증명서	좌동	신청서, 계약서, 최종수하인진술서	서류좌동, 관리의지강화에 따른 허가절차 강화됨 포괄수출의 경우 자율준수무역 거래자인증 후 허가신청 가능

* 자료 : 저자 직접작성

23) 허병일, 전략물자의 국제 수출통제체제와 한국의 대응에 관한 연구 - 대량파괴무기와 관련된 수출 통제체제를 중심으로, 2002, p 98.

24) 당시 일반산업용물자 103개, 군수물자 21개, 핵관련물자 24개 총 148개가 지정되었다.

2. 현행 전략물자수출입통제제도

2003년 1월부터 우리정부는 수출물품□기술이 대량살상무기(WMD) 등의 개발 등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수출을 제한하는 “Catch-all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04년 8월에는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 내에 전략물자관리과를 신설하였고, 같은 해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현 전략물자관리원)가 설립되어 전략물자 판정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전략물자 관련 기본법령으로는 대외무역법과 대외무역법시행령을 두고 있으며,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고시에서 수출통제 관련 구체적인 통제 품목, 수출지역 구분 및 통제 지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관련 법령으로 기술개발촉진법, 원자력법,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이 있다.²⁵⁾

IV. Global기업과 정부의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및 기대효과

1. Global기업의 의의 및 비즈니스 특성

오늘날 세계화(Globalization)는 무역장벽을 허물어서 세계의 상품, 서비스, 투자, 기술 시장을 하나의 단일시장으로 만들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화 시대에는 비교우위가 있는 상품, 서비스 투자, 기술의 영업범위가 넓어지는 것이며, 또한 비교우위가 있는 상품, 서비스, 투자, 기술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세계시장이 자국의 국내시장화 되는 것이다.²⁶⁾

글로벌 기업은 자국 내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해외의 소비자와의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하며, 전 세계에 걸쳐 영업내지 제조거점을 가지고 국가적 내지 정치적 경계에 구애됨이 없이 세계적인 범위와 규모로 영업을 하는 기업으로서 시장 및 경영방법의 국제적 공동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

25) 산업자원부/전략물자관리원, 전략물자 수출통제 전문과정, 산업자원부, 2007.

26) 한국안보통상학회 2007-1 학술세미나, 지역주의와 안보통상적 쟁점, 2007.4.27.

(1) 전략물자통제제도에 관한 인식 비교

일반적으로 국내기업의 경우 전략물자 수출을 관리하는 전문 인력이나 담당부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요 기업들 대부분이 영업부서 직원이 전략물자 업무를 담당하는 수준이다. 심지어는 한국의 Global 기업에서도 전략물자를 수출입을 담당하는 조직이 구축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반면 해외 글로벌기업의 경우는 전략물자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달리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내부 전담조직까지 구축하고 있다.

(2) 전략물자통제제도 이행상의 문제

Global기업의 수가 늘어나고, 해외 진출국가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전략물자 통제제도의 올바른 이행이 요구된다. 그러나 여러 제약적인 내외부적 환경 및 제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하여 Global기업은 이행 상의 여러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제약적 요인으로서 첫째, 글로벌 기업의 비용증가를 들 수 있다. 전략물자수출통제는 기업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비용증가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수출하려는 제품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 최종용도 및 최종수요자의 확인, 자료의 유지 및 이를 담당할 인력의 확충 등으로 인한 직접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수출에 필요한 절차의 증가에 따라 수출절차를 지연시킴으로써 간접적 비용 등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둘째, 국제무역 및 투자활동의 위축이다.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통제의 강화는 첨단물품 및 기술의 수출확대를 저해하거나 지연 및 차단함으로써 국제무역 및 투자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

셋째, 기업의 인식부족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기업들은 일부 소수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전략물자의 수출통제시스템이 무엇이며 그 중요성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는 전략물자의 수출통제 시스템에 대한 개념마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의 바이어에게 수출하였을 경우 혹독한 제재를 받아 거액의 벌금이 부과되고 수년간 리스트에 올라 수출입활동을 못하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2. Global기업의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및 기대효과

(1) Global기업의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1) 기업 내 통제환경 인프라 구축

기업의 입장에서는 우선적으로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불가피성과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스스로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Global기업은 더 이상 수출 통제를 비용으로 인식하지 말고 리스크(risk)관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또한 통제환경은 조직의 규율과 구성원의 청렴, 도덕적 가치와 경쟁력, 경영진의 철학과 경영관리 방식 등도 내부통제의 다른 모든 요소의 토대가 될 수 있으므로, 회사 사규 내 전략물자 관련 규정을 내부규정화 하여 전 사원이 이러한 제도의 이행 필요성을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2) 자율준수제도의 활용 확대

우리나라의 경우 전략물자자율준수무역거래자 인증제도(Compliance Program: CP) 실시 초기인 2006년 4월 당시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주)를 비롯하여 삼성전자, 삼성물산, 하이닉스, 캐논세미컨덕터 총 5개사만이 인증을 획득한 바 있고, 현재 37개 기업이 정부로부터의 인증을 획득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약 4,000여개, 일본의 약 1,300여개, 영국 □ 독일 등의 1,000여개 인증기업과 비교하면 상당히 적은 수에 불과하다.

내부자율준수프로그램(Internal Compliance Program: ICP)에 의한 자발적인 수출통제가 전술한 바와 같이 통관 등의 측면에서 발생하는 비용 및 소요 시간 등을 최소화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기업입장에서도 효율적인 전략물자 통제 관리를 통한 경쟁력 확보라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 기업들도 자체적 내부통제체제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²⁷⁾

3) 기업 내부 표준관리시스템 확립

Global기업이 새로운 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중소기업이 소수나마

27) 한국무역협회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 수출통제[이론과 실무], 2006.8, pp 291.

전문 인력을 고용하여 배치할 경우 규모에 따라 상당히 큰 비용이 들게 마련이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단 한 번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고 적발되는 경우라도 당해 기업이 치명적인 피해를 받고 파산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과 그것이 국가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키고 세계평화유지에 위협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업 내부 표준관리시스템의 확립은 기업에게 있어서 주요하게 구축하여야 할 부분이다. 관리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전략물자의 판별, 국제적으로 부적격자로 낙인찍힌 기업의 파악, 그리고 특히 일반물자를 거래상대방이 무기제조에 사용할 의사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표준화된 절차에 근거한 시스템적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최근 Global기업들의 최고경영진에 의한 환경정책 선언이나 Compliance 선언과 같이 표준화된 내부관리시스템의 필요성 및 준수에 관한 최고경영자의 기업 내 정책의지 및 선언을 통해 해당 기업은 이를 "Best Practice"로의 확대 발전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업은 결국 전사적인 위험관리 능력을 확보하게 되고 나아가 기업경쟁력 우위선점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하여야 할 것이다.

(2) Global기업 대응의 기대효과

최근 Global Compliance와 관련하여 기업 경영의 투명성,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 등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기업 내부적인 개선활동으로서 전개되고 있는데 이러한 활동과 아울러 기업의 Global Compliance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영위라는 효과를 확보하기 위한 국제평화 및 안보에 있어서의 사회적 책임의 분담자로서 기업이 공헌한다는 경영진의 의지 천명을 핵심요소로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첨단물품인 전략물자 수출입통제는 기업 활동에도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은 사실이다. 즉, 수출물품의 전략물자 해당여부 확인, 최종용도 및 최종수요자의 확인, 자료의 유지 및 담당인력 확보, 수출절차 지연에 따른 간접비용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은 전략물자수출통제 제도를 적절히 준수함으로써 법규위반에 따른 제재조치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제재의 위험성 없이 안정적인 사업을 유지함은 물론 첨단 기술 도입에 따른 새로운 사업기회로의 활용이

가능한 것도 인지하여야 할 것이다.

3. 정부의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및 기대효과

전략물자 수출입통제제도는 국가안보와 외교정책의 도구로서 필요함과 동시에 세계 평화 유지 목적의 WMD 확산방지 필요성의 대두로 인하여 세계적으로 강력하게 실시될 것이 전망됨에 따라 본 제도를 국제적인 추세 및 새로운 국제무역질서로 받아들여 우리나라의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도록 활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정부도 Global기업들이 수출통제 위반에 따른 제재를 받지 않도록 수출 통제를 강화해 나가야 함은 물론 이와 관련된 Risk로부터 벗어나 기업들의 자유로운 해외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시급히 필요하다.

(1) 정부의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1) 전문화를 통한 수출통제 관리제도 재정비

글로벌 기업의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기관의 전문화가 필요하다. 특히 아시아 지역의 경우 4개 체제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국가들이 상당수인 관계로 기업으로서는 해당 국가에서의 전략물자 관리에 있어서 리스크에 전면 노출되어 있다 하겠다. 이들 국가들에 대한 전략물자 통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그러한 가이드라인의 범위 내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수출통제 관리를 전문화함으로써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여 Global기업 비즈니스의 양적, 질적 확대를 지원하여야 한다.

< 표 6 > Red Flags

1. 수입업자가 해당물품의 최종 용도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제공을 기피하는 경우
2. 수출물품 등이 최종 사용자의 사업 분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 등이 수입국가의 기술수준과 현저한 격차가 있는 경우
4. 최종 사용자가 해당 물품 등이 활용될 분야의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5. 최종 사용자가 해당 물품 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물품 등의 수출을 요구하는 경우
6. 최종 사용자가 해당 물품에 대한 설치 보수 또는 교육훈련을 거부하는 경우
7. 해당 물품 등의 최종 수하인이 운송업자인 경우

* 자료 : 산업자원부/전략물자관리원, 전략물자 수출통제 전문과정, 2007.

일례로 현재의 Red Flag 운영을 Global Standard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표 6> 과 같이 현재 제공하고 있는 Red Flag²⁸⁾은 기업에게 명확한 지침으로 적용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Buyer's Market인 경우 이런 정황을 의도적으로 인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에 EU의 전략물자 관련 기업 가이드라인과 같이 정보 제공의 폭과 전문성을 강화는 물론 국내 글로벌스탠다드 기업을 모델로 한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구축을 지원할 하는 것도 또 다른 방안일 것이다.

2) Business Friendly형 통제제도로의 전환

미국 및 EU의 경우 강력한 수출통제로 인하여 기업이 자국 내 또는 해외 현지에서 겪을 수 있는 무역거래 장애를 해소시켜 줌으로서 기업에게는 무역거래에 있어서의 경쟁력을 정부에게는 제도운영을 통한 기업의 수출통제 참여를 촉진시키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이러한 세계적인 통제양상의 변화에 대비하여 물류적 측면의 지원제도 강구에 힘써야 할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C-TPAT 제도의 빠른 시행과 이미 제도화된 상용화주제등의 적극적인 연계를 통한 기

28) Red Flag란 통상 "위험신호"로 번역이 되는데, 위험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의미한다. 품목이 대량파괴무기 또는 미사일 확산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 징후를 열거한 것으로서, 모든 이상 징후를 포괄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고 예시적인 것임.

업 지원제도를 강구함으로써 국내기업은 물론 글로벌 기업의 국제무역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3) 무역공급망 보안체계 구축

우리나라의 최근까지 체결된 FTA 현황과 이후 체결국의 확대 정책 기조로 볼 때, 이로 인한 무역 물동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전략물자 수출입통제라는 관리수단의 강화와 아울러 Global기업의 지원제도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즉, 감시 강화를 위해 민관 협력의 기반 하에 항만에 집중된 보안활동을 국제공급망 차원으로 확대하고,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까지 이르는 새로운 개념의 안전 및 보안시스템 구축 및 선진화가 필요한 반면 제도 준수자에 대한 통관 및 허가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여 해당 기업에게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업지원제도의 마련이 필요한 것이다. 아울러 물류보안체계 구축을 위한 세관-세관 및 세관-민간기업간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국제거래 당사자간, 제조업자, 수출업자, 운송사, 관세사, 화물터미널 등 간의 공급망에서 보안을 확보하여 막힘없는 화물의 흐름을 증진하기 위하여 "세관-세관간"의 협정 체결이 필요한데, 이러한 네트워크간의 협정은 세관들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위협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적시에 정확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허가기관과 RFID와 물류보안시스템의 연계를 통한 전방위적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수출통제의 정확성과 업무처리의 신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현재 지식경제부 위주의 전산망 연계에서 방위사업청 등과의 전산망연계를 통한 전략물자 수출통제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4) 전략물자 통제조직의 고도화

국제적인 통제강화의 이면에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미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직시하여 정부로서는 전략물자 통제조직의 고도화에 힘써야 할 것이다.

첫째, 중앙통제기구의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 정부는 전략물자의 수출통제를 효과적으로 실시하는데 필수적인 중앙통제기구(control tower)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싱글 윈도우 제도를 운영하고 기업을 지원할 능력을 갖춘 정부 조직이 필요하다.

둘째, Outreach 활동의 강화가 필요하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자체는 물론 위반 시 가혹한 벌칙이 가해지는가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정부 및 유관기관이 주도하여 적극적인 Outreach 활동을 전개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셋째, 선진국의 관리시스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AEO 와 같은 제도는 점차 글로벌 수준에서 상호인정(mutual recognition)을 위한 협의를 통하여 일국의 제도가 타국기업에도 적용되는 방향으로 구축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동 제도가 국내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치밀하게 검토하고, 국내기업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쌍무협상을 통하여 국내기업이 AEO 지위를 획득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2) 정부 대응의 기대효과

전략물자의 철저한 관리는 국가적 신뢰 확보 및 전략물자 수입을 용이하게 하고, 국제평화 및 안보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의 국가적 신뢰도가 제고됨으로서 첨단물자 및 기술 수입이 용이하게 되어 국가산업 발전을 유도하기도 한다. 아울러 기업은 예방적 조치에 의한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법규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의 지속적 영위가 가능한 것이다.

전략물자수출통제는 국가 안보적 측면에서는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기여하고, 외교적 측면에서는 기업의 국제거래가 국가 간 분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방지하며, 수입측면에서는 전략물자 교역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필요한 첨단물자 및 기술의 수입을 원활히 하고, 기업보호 측면에서는 수출통제 위반으로 인한 무역보복을 차단하고 국내 전략물자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같이 적절한 전략물자수출통제체도의 구축과 시행 여부는 국가 및 기업의 국제경쟁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이런 국제적인 추세를 국제무역질서로 받아들여 새로운 사업기회로 대응한다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및 산업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외국 기업의 리드 효과(Foreign Direct Investment: FDI)촉진을 유발시키기도 하는데, VEU 제도 등의 시행을 통해 기업지원제도 측면에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인식이 중

국적으로 외국기업의 국내 유도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V. 결 론

전략물자수출입통제는 Global Compliance의 한 분야로서 주요 선진국인 미국이나 유럽 정부의 경우 강력한 전략물자 통제제도의 이행과 아울러 Global 기업의 비즈니스 지원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정부 및 Global기업들은 전략물자에 대한 인식 부족 및 정부 지원제도 미비로 전략물자 Global Compliance 측면에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현실적인 직시하고 다음과 같이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정부는 전문 인력 양성, 국제공조활동 강화, 행정개편을 통한 싱글 윈도우로서의 중앙통제기구조직의 설치 및 운영, 합리적인 선진 지원책의 적극적 도입과 Global 기업의 해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지식기반 네트워크 구축에 힘써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Global기업은 경영진의 확고한 관리의지를 기초로 기업 내 통제환경 인프라 구축, 내부통제제도의 활성화 및 기업 내부 표준관리시스템 확립을 통해 국제 규범 등에 대한 수준 높은 대응 능력을 배양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둘째, 전략물자 수출입통제제도를 우리나라 산업보호 방안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수출을 통하여 경제발전의 길을 모색해야 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전략물자의 수출통제제도를 피할 수 없는 "새로운 국제 무역질서 또는 국제무역규범"으로 인식하여야 함은 물론 현재 미국이나 유럽의 기업 보호 및 비즈니스 촉진 목적의 C-TPAT, VEU 및 AEO 제도 등의 Global기업 친화적 제도 마련의 시급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주요 선진국의 전략물자 통제 강화 이면에는 자국 산업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직시하여야 한다.

셋째, 통제기법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수출입통제의 명확성을 기하고 기업과 세관의 상호 보완적인 관리 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기업은 RFID 시스템을 세관은 RFID와 연계된 수출입통관 시스템의 구축으로 전략물자 관련 우범성

수출입품목에 세관의 Risk 관리 능력 배양 목적의 화물분류(Cargo Selectivity : CS)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요약컨대, 정부는 전략물자 Global Compliance와 관련하여 Global기업에 대한 지원의지를 가지고 국제적인 흐름에 동참하여 수출통제의 적극적인 개입과 아울러 지원제도의 도입 노력을 해야 하고, Global기업은 기업 내부적인 회계, 구매, 공급망 관리, 통관부문, 수출입관리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Global Standard로서의 Compliance 체계를 구축하여 발생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통제하고 조정 및 관리함으로써 기업본연의 목적인 영속성과 영리성을 유지 발전시킴은 물론 국제규범의 준수라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참 고 문 헌

- 김광식, 전략물자 수입증명서 및 통관증명서 발급제도 시행, 1993
- 김종찬,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2005.5
- 산업자원부/전략물자관리원, 전략물자 수출통제 전문과정, 산업자원부, 2007.
- 전략물자관리원, 미국 수출관리규정 (EAR) 설명회, 전략물자관리원, 2007.10.13
- 최승환, 국제경제법 제3판, 법영사, 2006
- 한국무역협회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 수출통제(이론과 실무), 박영사, 2006
- 한국안보통상학회, 2007-1학술세미나 지역주의와 안보통상적 쟁점, 2004
- 한국한보통상학회, 수출통제 규범의 최근동향 : 현안과 과제, 2007
- 허병일, 전략물자의 국제 수출통제체제와 한국의 대응에 관한 연구- 대량과
피무기와 관련된 수출 통제체제를 중심으로, 2002
- Choi, Seung Hwan(ed.),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 Law & Policy,
College of Law Kyung Hee University, 2006.8
- Export Control Act 2002 - 2007 Review of Export Control Legislation
- Exporter of Protective Vests caught by customs and fined, 16 May 2005
- Exporters of Body Armor and Helmets caught by HM Revenue and
Customs and fined, 19 September 2006
- ITS, Strengthening Multilateral Export Controls - A Nonproliferation
Priority, 2002.9
- <http://www.cbp.gov>
- <http://europa.eu.int>
- <http://www.cbp.gov>

ABSTRACT

A Study on Global Compliance of Global Companies under the Circumstance of Export Control

Choi, Choon Ho

On the stage of an international trade with well-developed transportation, communication system and proliferation of free trade, global companies who are eager to sustain business growth by cutting cost and pioneering new market are facing a new challenge named "Global Compliance" of business transparency, export and import regulations, and potential international business environment.

The purpose of a global compliance is to monitor and regulate a company's trade activities to reduce the risk of transactions that might violate relevant countries' laws, regulations, or standards.

After the 911, for strengthening the non-proliferation of the export control goods, UNSCR1540(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540(2004)) was declared in order to enforce the members to adopt the rules in the resolution into their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Companies does not realized that they need to get rid of the risks because they underestimate the importance of international security, caused by their careless management. That is why currently the export control program is not fully observed by the most. Lack of awareness for the export control and the poor system of each members could be the reason for this unstable operating status.

With this background, this thesis will study on the meaning of export control, schemes for companies to recognize its importance and governmental guideline to support global companies.

Keyword : global compliance, global company, export control